

심 사 보 고 서

【대 상 안 건】

1. 포항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연일 다목적체육관·동해 다목적체육관」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5. 「형산장파크골프장·북구게이트볼장」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공공위탁 동의(안)
6. 포항국제음악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자 치 행 정 위 원 회

포항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4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4월 12일

나. 회부일자 : 2024년 4월 16일

다. 상정일자

- 제31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30.)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박재민 예산법무과장)

가. 제정이유

- 마을세무사의 제도적 근거 및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마을세무사의 운영 및 역할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마을세무사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마을세무사의 상담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마을세무사 보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마을세무사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마을세무사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다. 관련법령

- 「세무사법」 제6조(등록)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박종율)

- 본 제정조례안은 마을세무사의 제도적 근거 마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을세무사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검토 결과, 원활한 마을 세무사 제도 운영과, 마을세무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는 적절하며, 상위 법령 위반사항 등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마을세무사 역할에 세무·회계 분야 교육, 조세 관련 시민 교육 및 강연 등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 바, 본 조례안 제정으로 마을세무사 제도가 활성화 될 경우 시민들이 더욱 폭 넓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 역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의 요지 : 생략

5. 토론의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4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4월 12일

나. 회부일자 : 2024년 4월 16일

다. 상정일자

- 제31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30.)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조현미 재정관리과장)

가.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에서 물가·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소액 체납세액 기준이 상향 개정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 기준세액을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금액에 맞춰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 가능 기준금액을 1매당 세액 “30만원” 에서 “45만원” 으로 조정함 (안 제5조)

다.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 「지방세기본법」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 「지방세기본법」 제56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박종율)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 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기준 세액을 “30만원” 미만일 때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었던 것에서 “45만원” 미만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일반우편 적용 기준 세액을 상향하여 세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징세 비용 절감의 효과가 기대됨.

- 검토결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의 요지 : 생략

5. 토론의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4년 4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4월 15일 포항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4년 4월 16일

다. 상정일자

○ 제31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30.)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조현미 재정관리과장)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

나. 주요내용

사업명	소재지	구분	지목/층수	취득면적 (㎡)	기준가격 (백만원)	취득사유	재산관리관
그린웨이철길숲 공영주차장 건설(안)	포항시 남구 대잠동 969	주차장	1동/3층	11,500	24,400	신축	재정관리과
블루벨리국가 산업단지 공공시설용지 매입(안)	포항시 남구 동해면 공당리 1036외 3필지	토지	대	5,731.7	1,235	매입	재정관리과
포항시립박물관 신축(안)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임곡리 129-1, 129-9	건물	1동/4층	8,240	45,446	신축	문화예술과
택전배수지 개량 공사 정수시설물 취득(안)	포항시 남구 연일읍 택전리 414 일원	건물	1층	6,000	3,200	신축	정수과

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박종율)

-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4년 제1차 수시분 「그린웨이철길숲 공영 주차장 건립(안)」 등 4건으로 제출되었으며, 각 안건별로 살펴보면,

① 「그린웨이철길숲 공영주차장 건립(안)」

- 그린웨이철길숲 공영주차장 건립은 그린웨이철길숲, 상생근린공원 이용객 및 관광객, 지역주민 등의 주차공간 부족 해소와 관광지 활성화에 기여하고, 불법주차·차량통행 불편에 따른 민원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됨.
- 다만, 관광지 주차공간 확보 및 시민들의 주차 불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의 취지와는 다르게, 주말시간 인근 음식점 하객 위주의 주차장 이용으로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 및 시민들의 주차 시설 이용이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영주차장 건립 혜택이 온전하게 관광객 및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식점 측과 주차시간 및 비용 문제에 대한 협의를 통하여 원활하게 주차시설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② 「블루벨리국가산업단지 공공시설용지 매입(안)」

- 블루벨리국가산업단지 활성화 및 주거지역 내 문화·복지·행정 수요를 대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공시설용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자체 매입계획 조화에 따라 부서별 활용의견을 수합하고, 공공시설용지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늘어나는 행정·문화·복지 관련 도시계획 시설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됨.

- 다만, 시에서 주도적으로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시설용지를 확보하는 만큼 사업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개발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③ 「포항시립박물관 신축(안)」

- 동해안권 대표 박물관 시설로서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과 지역의 역사·문화 홍보의 역할을 수행하며,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문화향유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됨.
- 지역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박물관의 부재로 그간 포항에서 출토된 수많은 문화유산이 타지로 반출된 바, 지역의 역사 및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수집, 연구, 전시 관리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사업 완료까지 많은 행정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단계별로 추진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④ 「택전배수지 개량공사 정수 시설물 취득(안)」

- 기존 배수지의 노후화가 심하고, 부지가 협소하여 기존 노후 배수지를 철거하고, 대용량 STS 물탱크를 설치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이후 결정된 사업으로,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절차상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의 요지 : 생 략

5. 토론의 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포항시립박물관 신축(안)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제외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

1. 수정이유

- 목록 제3항의 “포항시립박물관 신축(안)” 건의 경우, 사업추진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목록에서 제외하고자 함.

2. 수정내용

- 목록 제3항 “포항 시립박물관 신축(안)” 삭제

「연일 다목적체육관·동해 다목적체육관」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년 4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2월 29일

나. 회부일자 : 2024년 3월 4일

다. 상정일자

○ 제31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30.)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정정득 체육산업과장)

가. 제안이유

○ 신규건립되는 공공체육시설(연일·동해 다목적체육관)을 위탁관리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전문적이고 쾌적한 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민간위탁 대상사무 :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전반

- 공공체육시설 : 연일 다목적체육관, 동해 다목적체육관

- 시설 사용료·기타 수입금 징수, 시설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 등

○ 민간위탁 운영기간 : 3년

※ 위탁 개시일은 위탁대상 사무의 여건에 따라 정하되, 제반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결정

○ 민간위탁 대상 시설 세부 현황

연번	시설명	규모(m ²)		주요시설	소재지
1	연일 다목적체육관	연면적 1,731.70		지상1층 / 실외 게이트볼장(4면)	남구 연일읍 괴정리 305-1번지
		1층	1,731.70	체육관, 사무실, 다목적실 I·II, GX룸, 샤워·탈의실	
2	동해 다목적체육관	연면적 2,269.34		지하1층, 지상3층 / 실외 풋살장(1면)	남구 동해면 약전리 370-6번지
		B1층	227.05	펌프실, 전기실	
		1층	1,512.87	체육관, 관리사무실, 샤워·탈의실	
		2층	407.37	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 테라스	
		3층	122.05	하늘정원, 바다전망대, 공조실	

다.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제3조(위탁 관리)
-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회 동의)
-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계약의 체결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박종율)

- 본 동의안은 2024년 4월말 준공 예정인 공공체육시설(연일·동해 다목적체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민간위탁 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 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 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제3조(위탁관리) 제1항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민간위탁의 추진근거는 적정하다고 판단됨.
-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정기적이고 철저한 점검·평가를 통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 최근 민간위탁 중인 공공체육시설들의 사유화·독점화 논란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바, 체계적이고 투명한 시스템 마련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의 요지 : 생 략

5. 토론의 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형산강파크골프장·북구게이트볼장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공공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년 4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4월 15일

나. 회부일자 : 2024년 4월 16일

다. 상정일자

○ 제31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30.)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정정득 체육산업과장)

가. 제안이유

- 최근 민간위탁 중인 체육시설들의 사유화·독점화 논란이 많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권고가 있었고 시니어세대의 관심이 큰 스포츠 시설인 만큼 공공성과 안정성이 담보되는 시설 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 대상사무

- 체육시설 운영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파크골프장, 게이트볼장 등 위탁 재산 전반 유지관리 및 운영
- 체육시설 사용료, 기타 수입금 징수 및 공공요금 납부
- 기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등

○ 위탁 운영기간 : 5년

※ 위탁 개시일은 위탁대상 사무의 여건에 따라 정하되, 제반 행정 절차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결정

○ 위탁 대상 시설 세부 현황 (※ 5월 중 준공예정)

연번	시설 명	위 치	규 모	비 고
1	형산강 파크골프장	남구 해도동 130-1번지 일원	17,935m ²	4코스 36홀 관리동, 안내판 경계그물망 등
2	북구 게이트볼장	북구 양덕동 837-41번지 일원	5,730m ²	게이트볼장 6면 관리동, 휴게실, 화장실, 주차장(24면) 녹지시설 등

다. 향후 추진계획

- 위·수탁관리 계약 체결 : 2024. 5월 예정
- 위탁운영 기간 : 5년

라.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
-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10조
(선정 및 계약의 체결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박종율)

- 본 동의안은 2024년 5월 준공 예정인 ‘형산강 파크골프장’ 과 ‘북구 게이트볼장’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공익적 관리 및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 북구 게이트볼장은 당초 시설 유지관리 측면보다는 지역 동호인들의 체육활동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어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추진되었으나, 최근 게이트볼에 대한 시니어 세대의 폭발적인 관심과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민간위탁 방식으로는 원활한 운영이 어려울 수 있어, 공공위탁 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된 바,
-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경우 공공체육시설의 특정단체 독점을 사전에 방지하고, 숙련된 전문인력 활용 등의 장점이 있어 시민 만족도 제고 및 효율적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의 게이트볼장 사용료가 현재는 관내 시민 대상은 무료인 관계로 수익성 측면에서 저조할 수 있으므로,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 실시 및 재산정으로 해당 시설의 위탁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면서 경영실적 역시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의 요지 : 생략

5. 토론의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포항국제음악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년 4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4월 15일

나. 회부일자 : 2024년 4월 16일

다. 상정일자

○ 제31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4. 30.)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이동하 문화예술과장)

가. 제안이유

- 지역의 문화예술진흥 및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중요 시책지원과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재)포항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사업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향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개요

- 위 탁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수 탁 기 관 : (재)포항문화재단
- 위탁사업비 : 360백만원 * 2024년 본예산 기준
 - ※ 위탁기간 중 위탁사업비는 의회 예산안 의결금액으로 함
- 위탁사무 등 위탁범위

- 포항국제음악제 총괄 운영
- 프로그램 기획 및 출연진 섭외, 홍보 마케팅 등
- 공연 예매 및 발권, 입장료 징수에 관한 사항
- 안전한 행사 개최를 위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탁자가 필요에 의하여 지정하는 업무
- 선정방법 : 수의계약
 - 수의계약 근거
 - 「포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제5조(사업의 위탁)
 -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재단의 사업)

다. 향후 추진계획

- 위·수탁 계약 체결 : 2024. 6월

라.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포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제5조(사업의 위탁)
-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재단의 사업)
-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의회 동의)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박종윤)

- 본 동의안은 경북을 대표하는 고품격 클래식 음악제 표방하는 포항국제음악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포항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 검토결과 ‘포항국제음악제’는 시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권 확보와 포항시의 도시브랜드 및 문화적 위상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 사업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사업의 기획·운영 및 수행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포항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위탁사무 및 운영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포항시 및 포항문화재단의 자체감사, 집행내역에 대한 철저한 정산 등 적극적인 사전·사후 통제 장치 활용과 함께, 포항국제음악제가 경북을 대표하는 클래식 음악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홍보활동 강화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의 요지 : 생략

5. 토론의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